



사 단 「정책선도와 병원 선진화로 의료강국 실현」
 범 인 대 한 병 원 협 회

수 신 수신처참조

참 조

제 목 항바이러스제 급여안내

1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-667 (2015.1.26)

2. 이와 관련, 보건복지부는 "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" 발령(2015.1.22)에 따라 요양기관의 항바이러스제제 "Oseltamivir phosphate 경구제(타미플루캡슐 등)"의 보험급여 적용에 대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급여기준 등에 대해 알려와 안내합니다.

- 인플루엔자(신종인플루엔자 포함)주의보가 '15.1.22.일자로 발령되었으므로 다음의 고위험군 환자에게 초기증상(기침, 두통, 인후통 등 2개 이상의 증상 및 고열)이 발생한지 48시간 이내에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. 다만, 입원환자는 증상발생 48시간 이후라도 의사가 투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투여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.

가. 고위험군

- 1) 1세 이상 9세 이하 소아
- 2) 임신부
- 3) 65세 이상
- 4) 면역저하자
- 5) 대사장애(Metabolic disorders)
- 6) 심장질환(Cardiac disease)
- 7) 폐질환(Pulmonary disease)
- 8) 신장기능장애(Renal dysfunction) 등

- Zanamivir 외용제(품명: 리렌자로타디스크)의 급여기준은 첨부파일 참조 요망

붙임 : 항바이러스제 관련 급여기준 1부 (붙임자료는 본회 홈페이지 (www.kha.or.kr / 협회업무 / 보험국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함). 끝.

대 한 병 원 협 회 장



수신처

전국 병원장

대리 이다미 팀장 정윤학 국장 류향수

시행 : 보험 제 2015-51 (2015.01.27)

우 121-737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15(마포동 35-1) 현대빌딩13~15층 대한병원협회 / 홈페이지

지 : www.kha.or.kr

전화 02-705-9256 전송 02-705-9259 (대표FAX : 02-705-9209) E-mail : ldm@kha.or.kr